

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

제정 1986.12. 3 개정 2014. 9. 1
개정 1994. 3. 4 개정 2015. 4.24
개정 1994.12.24 개정 2019. 2.11
개정 2001. 6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1장에 규정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은 학기포상과 졸업포상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학기포상) ① 품행이 단정하고 낙제과목(F)이 없는 자로서 학기말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, 평점 평균이 3.6이상인 자는 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한다. (개정: 2019. 2.11)

② 학기중 특별한 선행실적이 있거나 대학의 명예를 빛낸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. (개정: 2019. 2.11.)

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우등생이 될 수 없다.

④ 포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졸업포상) ① 재학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졸업시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포상하고,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. (개정: 2019. 2.11)

구 분	평점평균
최우등급(Summa Cum Laude)	3.9 이상
우등급(Cum Laude)	3.6 이상

② 계열별 수석졸업자, 재학기간중 7회이상 우등생 수상자 및 평점평균 3.9이상인 자는 성적우수자로 포상한다.

③ 재학기간중 특별한 선행실적이 있거나 대학의 명예를 빛낸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. (개정: 2019. 2.11)

④ 재학기간 중 ‘포스테키안 활동’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고 수행성과가 우수한 자는 “PROUD POSTECHIAN 포상”을 하고, 학적부에 기재한다.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: 2019. 2.11)

제5조(특별포상 대상자 선발) ① 특별포상 대상자는 학과주임교수 또는 학생처장이 별지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, 추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9.2.11)

② 특별포상 대상자는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. (개정: 2019.2.11)

제6조(시상) 학기포상은 매학기 초에, 졸업포상은 전기 학위수여식 거행시 수여하며 포상 대상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부상을 수여한다.

제7조(징계의 구분) ① 징계는 근신, 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정학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분한다.

제8조(징계의 사유)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
2.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3.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
4.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및 훼손한 자
5.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자

제9조(학사경고) ①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.0에 미달할 때에는 학사경고를 과한다.

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을 과할 수 있다.

③ 재학기간중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유기정학 조치를, 통산 3회 받은 경우에는 제적조치한다.

제10조(징계절차) ① 학생이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관련부서는 그 사유를 학생생활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학생생활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심의하여 최종 징계조치를 결정한다.

③ 학생생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(삭제)

⑤ 학업성적과 관련된 징계는 학생생활위원회 심의과정 없이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11조(징계통보) 학생처는 징계결과를 본인, 본인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및 보증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징계에 따른 불이익 조치) 직전학기에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일체의 장학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징계해제) ① 모든 징계는 해당 징계기간이 만료됨으로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② 징계기간 만료전에 징계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이 학생생활위원회에 징계 해제를 제청하거나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학생생활위원회에 징계해제를 제청한다.

③ (삭제)

제14조(학적부 등재) ① 모든 포상 및 징계사실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공고한다.

② 졸업포상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. 12. 3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12월 2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2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학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3조 및 제4조 1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, 제4조 3항 및 4항,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(별지서식)

(전 면)

공 적 조 사			
소 속	포항공과대학교	학과	학년
성 명	((한자))	생년월일	20 년 월 일생
주 소			
출신고교		과거 대혼 관계	
공적사항 (6하원칙에 의거)			

(후 면)

공적사항(전면에 이어서)			
년 월 일	학력 및 이력		
		조 사 담 당	
		직 위	
		성 명	(인)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			
20 년 월 일 직책:			
		성명	(인)